

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2누132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○○ 담당변호사 ○○○, ○○○
피고, 피항소인 ○○시장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구합69166 판결
변 론 종 결 2023. 7. 7.
판 결 선 고 2023. 7. 21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9. 9. 3. 원고에게 한 취득세 311,988,510원, 지방교육세 31,177,650원 합계 343,166,160원 부과처분 및 취득세 511,736,490원, 지방교육세 29,242,080원 합계 540,978,5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

이 유

1. 제1심판결 인용

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원고는, 이 법원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,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, 모자리츠의 구조 및 주택도시기금의 출자경위 등을 고려하면, 원고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50%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, 적어도 이 사건 토지만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의 '출자한 것으로 보는'이라는 문언상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하여 주장한다.

제1심이 적절하게 실시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, ①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, 취득세 감면요건이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될 국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에 다툼이 없는 등 실질과 형식이나 외관이 다르지도 않는 점, ② 도시주택기금이 이 사건 관계회사에 출자하고 이 사건 관계회사가 원고에 출자하였더라도 이 사건 관계회사 존재의 독자적인 경제적 실질이 있는 점, ③ 이 사건 관계회사가 원고에 출자한 경우 이를 '국가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'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, 이 사건 관계회사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을 국가가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3

소유한 주식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.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